

제 433 호

1974.2.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18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 819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특별조례
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1344호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접수제행정처분규칙
개정규칙..... 3

◎ 고 시

제 17 호 도시계획시설 (상수도) 결정및지적승인..... 24

◎ 공 고

제 27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24

제 28 호 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25

제 29 호 분뇨특별청소제외 (비수거) 지역지정공고.....25

◎ 사 령 26

◎ 정 정 30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립근로자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조례제 818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
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중 "90일이내"를"180일이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조례제 819 호

서울특별시세의과세면제에관
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3 항 중 " 1973년 12월 31 " 을
" 1974년 12월 31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규 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접수제 행정처분
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344 호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접수제 행
정처분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접수제 행정처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함으로써 운전

자의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또는 동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으로 부터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즉결 출두지시서를 교부받은 운전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배점기준) 교통법규 위반행위별 점수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 4 조 (배점기간 및 방법) 위반점수에 대한 배점은 매년 1월 1일 부터 개시하되 1년간을 한도로 취소처분 점수 (121점) 에 도달할 때까지 위반시마다 해당 점수를 누산한다.

제 5 조 (처분구분) 이 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처분의 한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전

면허를 취소한다.

1. 별표 2에 의한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

2. 1년에 별표 1 및 별표 3에 의한 위반점수가 121점에 도달하였을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

1.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

2. 법원 출두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정지기간중 출두하여 즉심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즉일로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3. 처분기준의 한계는 별표 4에 의한다.

제 7 조 (행정처분의 절차) ①교통법

규 위반 운전자를 적발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두지시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동사실을 서울특별시장 (이

29 / 3

<p>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관물을 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출두 기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반별 배점수 및 행정처분 내용을 면허대장(정, 사본)에 기재하고 보관물이 유실되 지 않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p>	<p>금 납부기일내에 범칙금을 납부하 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때 또는 법규위반 운전자가 벌과금을 납부하고 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물을 반 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 만료일 12:00 이후에 반환한다.</p>
<p>③다른 시도에서 이첩된 사항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다른 시도로 이첩할 사항은 경찰서장이 해당지로 직송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보고) 접수제 행정처분 결 과는 별첨 서식에 의하여 년 1회 1월 10일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p>
<p>제 8 조 (행정처분의 통지) 위반별 배 점수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통 지는 범칙금 영수증서 또는 벌과 금 납부증명서 이면에 행정처분 사 항을 기록하여 본인에게 교부함으 로서 통지한 것으로 가름한다.</p>	<p>부 칙</p>
<p>제 9 조 (보관물의 반환) 행정처분 기 간이 만료되었거나 범칙자가 범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4년 2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집행중인자 와 법규위반자 및 사고야기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분기준에 의한 다.</p>

<별표 1>

집 수 제 행 정 처 분 배 점 기 준

1. 통고처분항목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배 점	내 용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정지선위반포함)	도로교통법 제 5 조	5	신호기의 신호 또는 교통경찰관의 지시와 신호에 따르지 않을때, 교차 로의 직전이나 정지선이 있을때, 정 지선에 장지하지 않을때
2	통행금지 및 제 한구역통행	도로교통법 제 6 조제 1 항 제 2 항	3	시장이 지정하는 금지및 제한구역을 통행하였을때,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금지또는 제한한 구역을 통 행하였을때
3	도로통행의금지 또는 제한	도로교통법 제 54 조	3	경찰서장이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한 구역을 통행하였을때
4	혼잡완화를위한 조치불응	도로교통법 제 7 조	2	경찰관이 거마의통행이 정체 또는정체 우려가있어 필요한조치 명령에 불응 하였을때
5	통행구분위반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 11 조	1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 도를 통행하지 않을때, 도로의 중앙 우측을 통행하지 않을때
6	차선위반 (진행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 11 조의 2 제 2 항	5	차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에서 차선 에따라 통행하지 않았을때, 도로교통 법시행세칙 (이하 "세칙"이라한다) 제 11 조 (차선에따른통행구분) 도로중앙우 측에 2 이상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을 때그차선에따른 통행구분에위반하였을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배 점	내 용
7	통행우선순위 위반	도로교통법 제 12 조	2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가 내무 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위반하였을 때 (최고속도의 순서..... 세칙제 12 조)
8	횡단등의금지 위반 가. 회 전 나. 후 진 다. 횡 단	도로교통법 제 14 조	3	저마의 정신적인 교통을 방해할 염 려가 있을때 회전횡단 또는 후진하 는 행위
9	안전거리확보를 이행	도로교통법 제 15 조	3	동일 방향 진행 앞차가 급정지하였을때,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때, 진로를 변경하고 자 할 때, 그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를 진행하여 오는 제후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을 때
10	진로양보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16 조	3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제차는 ○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를 제외하 고는 통행우선순위의 제차가 뒤따를때,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하여 도로를 양보하지 않을 때 ○ 동일순위 또는 제후차의 속도보다 느린속도로 진행하려고 할 경우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배 점	내 용
11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 17 조	15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 앞지르지 않을 때, 대면 교통 및 전방교통에 도 주의하여 도로의 상황 및 속도 에 따라 경음기사용등 안전한 속도 와 방법으로 운행하지 않을 때
12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 21 조	3	우회전시 : 미리 도로 우측단으로 서행하지 않을 때 좌회전시 : 미리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교차로 중심내측으 로 서행하지 않았을 때 방향전환신호를 한 앞차의 진로를 방해하였을 때 선 진입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을 때 진행방향 우측도로의 제차에게 진로 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동일순위차 에 한함),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을 때 (진행방 향 우측도로의 제차보다 우선)
13	직행 및 우회 전차 우선	도로교통법 제 22 조	3	좌로 방향전환시 직행 또는 우회전제차 의 진행을 방해하였을때, 미리 좌회전하 고 있는 제차가 있을때, 직행 또는 우회 전 제차가 당해차의 진로를 방해하였을때
14	보행자의 보호 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 23 조	15	0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 로에서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 호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 행을 방해하였을 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배 점	내 용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때
15	서행 및 일시 정지위반	도로교통법 제 26 조	3	서행위반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았을 때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않았을 때 ○ 경사로의 정상부근에서 서행하지 않았을 때 ○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았을 때 일시정지위반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및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16	정 차 위 반	도로교통법 제 27 조	3	○ 교차로, 횡단보도, 전널목 및 궤도시설내 ○ 교차로의 측단 및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 미터 이내 ○ 안전지대의 우측 및 그 전후 양측으로부터 각각 10 미터 이내 ○ 정류장 표시주(판)로부터 10 미터 이내 (승합차제의) ○ 전널목 측단으로부터 10 미터 이내 ○ 기타 시장이 지정 한 장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배 점	내 용
17	주차위반	도로교통법 제 28 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기기, 기구 비치장소로부터 5미터이내 ○ 소방용 소방수조로부터 5미터이내 ○ 소방정, 소방수조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투입하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 ○ 도로공사장구역 양단으로부터 5미터이내
18	주정차방법및 시간제한	도로교통법 제 29 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의 우측단에 정차하지 않았을 때, 다만 차도,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50미터 상거하지 않았을 때 ○ 승합 자동차가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강이 끝나는 대로 즉시 출발하지 않거나 뒤따르는 제차의 정차를 방해하였을 때 ○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시간 및 방법에 위반하였을 때
19	제차의 등화 조작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30 조	1	<p>도로교통법시행령 (이하 "령" 이라 한다) 제 12 조 (도로통행시 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승용, 승용, 소형승용,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전조등 ○ 피견인차 : 미등, 차폭등, 번호등 <p>영제 13 조 (야간주, 정차시 등화) 미등</p>

29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배 점	내 용
				차폭등 (원동기는 미등) 영제 14 조 (야간에 준하는 경우) 안개 기타 어둠으로 전방 100 미터이내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영제 15 조 (야간교행시) ○ 전조등의 광도감 (減) ○ 전조등의 광도하향 ○ 보조 전조등이 있을 때에는 전조등소등 ○ 전조등 일시 소등 ○ 교통이 빈번한 장소는 계속하향 기타 자동차이외의 제차는 시장이 지정
20	제차의 신호 조작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31 조	3	방향전환, 횡단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동일방향 진행중 진로변경시에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그 행위종료시까지 신호하지 않을 때 영제 16 조 ○ 좌, 우회전 및 진로변경시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30 미터이전 ○ 정지, 후진, 서행, 후방차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하거나 시키고자 할 때
21	경음기의 사용	도로교통법 제 32 조 제 1 항	2	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 모퉁이지점, 경사로 또는 굴곡이 많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배 점	내 용
				은 산중 도로에서 경음기를 사용 하지 않았을 때 ○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22	경음기의 사용 제한	도로교통법 제 32 조 제 3 항	2	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 이외의 장소와 경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 역내에서 경음기를 사용하였을 때
23	정 원 초 과 가. 승합 30% 미만 나. 승용 20% 미만 다. 화물 1명 초과 가. 승합 30% ~ 50% 나. 승용 20% 40% 다. 화물 2명 초과	도로교통법 제 33 조 제 1 항	5 15	(시내버스 RH 제외) RH 출근시간전 2시간
24	적재초과	도로교통법 제 33 조 제 2 항	3	길이 : 차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소형 2륜차는 적재장치 길이에 30 센치미터를 더한 길이) 폭 : 자동차의 적재함 (소형 2륜은 적재장치 길이에 30 센치미터 를 더한 길이)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미터 (소형 3륜은 2.5미터, 소형 2륜은 2미터) 다만 경찰서장 허가하는 제외
25	자동차의 견인 제한위반	도로교통법 제 34 조	1	○ 피견인차 1대 이상을 견인하였을 때 ○ 견인차의 전단으로부터 피견인차의 후단까지 25미터를 넘었을 때 ○ 고장차의 견인 ※ 구텐, 쇠사슬등으로 고정치 않 았을 때 (피견인차, 전후륜(輪) 을 올려서 견인할 때

인 련 번호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비 점	내 용
				* 피견인차의 운전자가 당해차에 승용하지 않았을 때 (피견인차 전후륜을 올리지 않았을 때) ○ 피견인차와 견인차의 거리가 5 미터 초과하였을 때 ○ 자동차의 견인시 위험방지를 위 한 경찰관의 조치명령에 불응할때
26	제한속도준수위 반(30킬로미터 미만) 가. 10 km 미만 나. 10 km 이상 -30 km 미만	도로교통법 제 42 조	2 5	법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세척제 12 조, 제 13 조의 제한속도 및 시장이 지정하는 제한속도를 위반할때
27	안전운전불이행 (경미)	도로교통법 제 43 조	2	조향 (操向) 장치, 제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 황 및 차량의 성능, 구조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였을때
28	교 양 미 필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2 항	1	○ 정기교양 미필 ○ 법규위반자 교육미필
29	안전면허 기재 사항 미변경	도로교통법 제 62 조	1	사유발생시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 을 때
30	운전자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제 2 항	2 15	○ 오수, 오토비산 행위 ○ 보호자없이 아동, 유아가 보행하 고 있거나 맹인이 백색지팡이를 들고 보행하고 있을때 일시 정지 하거나 서행하지 않을 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배 점	내 용
		제 3 항	15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때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을때
		제 5 항	5	○ 승객 또는 화물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적절히 닫고 운행하지 않을때
		제 6 항	5	○ 운전석으로부터 이석시 정지상태 보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았을때
		제 7 항	2	○ 기타 시의 고시위반 *월동장구불휴대 (12월-익년3월) ○ 교양카드불휴대 ○ 승객승차증 급유 (승합, 승용에한함)

2. 즉심회부항목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배 점	내 용
1	앞지르기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 18조	15	○ 앞차와 다른 제차가 나란히 통행할때 앞지르는 행위 ○ 앞차가 다른 제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때 앞지르는행위 ○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 정상, 급경사의 내리막 및 시장이 정하는 장소 ○ 법령규정과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지 서행하는 제차를 앞지르는 행위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배 점	내 용
2	통행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5	15	주행차선의 좌측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았을 때
3	전널목통과방법 위반 (일단정지)	도로교통법 제 20 조	15	철도전널목 일단정지 불이행 ○ 전널목직전에서 일단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후 통과치 않을때 ○ 차단기가 내려졌거나 내려지려고 할때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 에는 전널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4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일시정지위반	도로교통법 제 24 조제 3 항제 4 항	10	일시정지 :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좌측으 로 일시 정지하지 않았을 때 피양 : 교차로 아닌 장소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였을 때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지 않았을 때
5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입방해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9 제 2 항	10	고속도로에서 긴급 자동차외의 자동 차는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 입하고 있을 때에는 그 진입을 방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주차방법위반 차량의 조치불 응	도로교통법 제 29 조의 2 제 1 항	10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 정차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 명령에 불응할 때
7	정비불량제차의 운전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 35 조	10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그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 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을 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배점	내 용
8	피로시의 운전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 40 조	10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 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 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을때 (도로 최면, 굴곡운전등 현저한 과로상태)
9	위험방지조치위 반	도로교통법 제 41 조	10	음주, 과로운전자가 운전금지 명령및 필요한 조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10	위험방지등의 조치불응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3	10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 조치지시에 불응할때
11	제한속도위반 (30 키로미터 이상)	도로교통법 제 42 조	15	
12	안전운전불이행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 43 조	15	타인에게 위해 초래 행위중 ○ 전, 좌, 우 주시태만으로 위해초래시 ○ 굴곡운전 ○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하여 도로의 좌우로 핸들을 급조작 및 급제동하는 행위 ○ 지선도로에서 간선에 진입시 일 단정지하였으나 직행차량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였을 때
13	교통사고발생시 신고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45 조제 2 항	30	경찰관 (관서 포함) 에게 3 시간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14	횡단의 금지위 반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7	15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였을 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배 점	내 용
15	고장등의 경우 조치불응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10	10	고속도로에서 고장 기타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때 고장차량표지를 당해 차량의 후방노상에 설치하지 않았을때
16	주·정차금지위 반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8	10	고속도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경 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때 이 외에는 주·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7	고속도로상 준 수사항위반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11	10	고속도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내무부령으로 지정)
18	고속도로진입위 반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9	10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 다른 제차가 고속도로를 통행 하고 있을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
19	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 64 조	10	○ 면허증, 면허증의 증명서 또는 출두 지시서를 휴대하고 운전하지 않았을 때 ○ 경찰관의 제시요구에 불응하였을때
20	지정 속도위반 가. 10 km 미만 나. 10 km 이상 30 km 미만 다. 30 km 이상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6	10 20 30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속도에 위반 하였을 때
21	주취중 운전금 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 39 조	30	혈액 1 mm에 대하여 0.5 mg 또는 호 흡 1 l 에 대하여 0.25mg 이상 음주 하고 운전하였을때
22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45 조 제 1 항	60	즉시 (그때 그자리에서 곧) 사상자 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않았을때

별표 2			
취 소 처 분 기 준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내 용
1	정원 초과 가. 승합 50% 초과 나. 승용 40% 초과 다. 화물 3명 초과	도로교통법 제 33 조	시내버스에 한함. RH는 제외 (RH : 출근시간전 2시간)
2	교통사고 야기도주	도로교통법 제 45 조	사고발생시 조치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3	타인에게 면허대여 (도난, 분실제외)	도로교통법 제 55 조	면허소지자가 유면허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였을때
4	결 격 사 유	도로교통법 제 57 조	1. 18세 미만인자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 2. 필요시 취소사유 가.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자, 맹자, 농자, 아자) 나. 색맹자, 사지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자 다. 아편, 마약, 알콜중독자 3. 면허취소일로 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았거나 효력의 정지를 받 고 있는자 4. 일종 대형면허를 받은자가 25세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내 용
			미만이거나 3년이상의 자동차운전 경력이 없는 자
5	적성검사미필	도로교통법 제 61 조	운전면허를 받은날로 부터 매 3년마다 3개월이 경과하였을때 (*연기제도 활용)
6	운전면허 행정처 분 기간중 운 전	도로교통법 제 65 조	
7	출두기일경과 불출 두	도로교통법 제 68 조	정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자.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8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도로교통법 제 65 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 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9	위반점수초과	도로교통법제65조	1년에 121점이상
10	타인의 면허로 운 전한 행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제7항	면허취득자가 타인의 면허를 대여받 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로 운전하였을때
11	행정처분 기간중의 자동차 운전	도로교통법 제 44조제7항	통행정지중의 자동차를 운전하였을때 (교의, 과실, 불문)
12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한 취소 사유에 해당 될때		

별표 3 교 통 사 고					
1. 인명피해					
구 분 배 점	사 망	중 상	경 상	신 고 (부상신고)	비 고
6 점			1	3	
10			2	6	
15		1	3	9	
20			4	12	
25			5	15	
30		2	6	18	
35			7	21	
40			8	24	
45	1	3	9	27	
50			10	30	
60			11	33	
70		4	12	36	
80			13	39	
90			14	42	
100		5	15	45	
110			16	48	
120 이하			17	51	
121 이상	2	6	18	54	취 소

2
19

2. 재산피해		
배 점	피 해 액	비 고
3	5,000원 미만	
5	5,000원 이상 - 4만원	
10	10만원 이하	
15	20만원 이하	
20	40만원 이하	
25	60만원 이하	
30	70만원 이하	
35	80만원 이하	
40	90만원 이하	
45	100만원 이하	
50	100만원 초과	

별표 4 처분 기준의 한계

1. 사. 상구분

의사의 진단 3주일이상을 중상 5일이상 3주일미만을 경상. 5일미만을 부상신고로 한다. 다만, 부상신고 3명을 경상 1명, 경상 3명을 중상 1명, 중상 3명을 사망 1명으로 간주하여 면허 행정처분 한다.

2. 사망자의 처리 기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2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부상자가 교통사고가 주 원인이 되어 24시간 경과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으로 간주 처리한다.

3. 사고의 경합

인사사고와 불적사고가 경합되었을 때에는 중한 1개의 처분만을 적용한다.

4. 피해액의 산출

재산 피해액의 산출은 가해자와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견적서에 의하되 조사경찰관이 피해부분을 확인 후 적정한 피해액을 산출 결정한다.

5.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

교통사고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포함)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면허의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6. 행정처분의 결정

가. 중한 규정의 적용

교통법규위반 (원인행위) 보다 결과 발생 (인적, 물적피해)이 경할 때에는 중한규정을 적용한다.

나. 어린이 교통사고

13세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당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1/2가중한다. 다만, 6세미만의 유아가 보호자의 보호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피해자 과실 사고

운전자로서 불가항력적인 명백한

2
2

피해자의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라. 쌍방과실의 경우 (차대 사람) 자동차대 사람의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면허행정처분을 1/2경감한다.

마.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조치 또는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원인과 결과중에서 중한 점수를 합산 처리한다.

7. 배점 및 처분

가. 배 점
운전자 1인 위반점수 120 점을 상한 점수로 한다.

나. 처 분
1) 점수제 행정처분 배점기준에 의하여 4점이 될 때까지는 위반시마다 통고처분 또는 즉심에 회부하되 5점부터는 위반점수를 합산하여 1점에 1일 정지처분

하고 120점에 도달할 때까지 점수는 계산한다.

(4점 + 위반점수 = 정지일수)

다만 한번 정지 처분한 위반점수는 다음 위반점수에 합산 정지처분치 않는다.

2) 국제 운전면허 소지자는 점수제 행정처분 배점기준에 따라 정지처분(보관)만 하고 취소처분은 하지 않는다.

8. 타법령규정 위반자

운수관계 법령 및 기타 법령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심에만 회부하고 면허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 운수사업법제 31 조의 규정에 관한 처분규정 항목위반은 3일 이내에 경찰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국장은 3일 이내에 운수당국에 통보하여 차량 운행정지처분하도록 조치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7 호

도시계획시설 (상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상수도)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43 조의 규정과 상수도 시설조서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4.4.4)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11

서울특별시장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상수도용지	성동구 풍납동 195-4 195 5) 각 1부	693	천호수도관리사무소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천호출장소에 보관함.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7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7 호 (71.6 25)로 실시 계획인가된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 제 85 조 제 1 항 및 46 조 제 3 항의 규정과 건

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9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집행지 : 시내 관악구 봉천동
· 산 103-1 의 1 필
- 2.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3. 준공면적 : 39,646평
- 4. 사업시행자 : 국회직원주택지조성사업

- 조합장 박 보 섭
- 5. 사업기간 : 착 공 : 71.10.12
준공예정 : 73.12.20
- 6. 준공년월일 : 74. 2. 9
- 7. 준공도면 : 별첨 인증도면

◎ 서울특별시 공고제 28 호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 1. 망우·역촌·도봉·화양토지 구획
정리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
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에정지를 지정합니다.
- 2.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도면
-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성

리 1 과 또는 각 해당구청 시민홀
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3.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될 것이나 서
류송달을 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통지
에 갈음합니다.

첨 부 : 1. 조 서

2. 도 면 (생략) . 끝 .

1974. 2.

서 울 특 별 시 장

공 고 (안)

◎ 서울특별시 공고제 29 호

분노특별청소제외 (비수거)
지역지정공고

오물청소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서울특별시 특별청소 지역에서
제외되는 분노의 비수거지역을 지정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4. 1. 18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별	동 명	동	구 별	동 명	동
도 봉 구	공능동	전 지 역	관 악 구	사당 1동	일부지역(1, 2, 3, 4,
천 호출장소	길 동	"			5, 8, 9, 10, 11, 13,
양서출장소	과해 동	"			16, 19, 20 통)
영 동출장소	잠원 동	"	천 호출장소	암사동	일부지역(1-6, 8,
"	서초동	"	"		9, 10, 12 통)
"	도곡동	"	"	송파동	일부지역(1-4, 9통)
"	세곡동	"	양서출장소	발산동	" (1-3, 5통)
"	일원 동	"	동 대 문구	신내동	" (3, 5통)
"	잠실 동	"	계		14 동

사 령

◎ 1974.1.31

도시 가스 지방행정
사업소 사무관

박 형 원

지방서기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도시 가스 사업소장에 보함.

◎ 1974.2.9

성 북 구 지방전기
기사보시보

이 두 영

본인 임용포기로 인하여 74.

1.25 자 신규 임용발령을 동일

자로 취소함.

◎ 1974.2.11

건축과 지방건축 이 은 학
(건축1계장) 기 화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4.2.13

양 정 과 지방행정 김 진 우
(군복무휴직중) 서 기 보

부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양 정 과 기 합 부 신 중 만
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칙제 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명함.

중 구 행정주사 방 규 영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중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조 광 래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구 혜 승
중 구 지 방 행 정 서 기 관	전 하 진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중 구 지 방 행 정 서 기 관	이 순 오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박 정 옥
서울특별시 비상계획관실 서기관	유 인 형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호봉을 급함.	
	1974년 2월 13일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인천시중구 지방행정사	조 상 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 1974.2.15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광 주 군 농 촌 보 농촌지도소 지도원보	김 장 열	3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원보에 임함.		경북달성군 지방행정사	조 필 호
3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윤 애 자	2호봉을 급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도봉구청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원 주 시 지방행정사	이 종 성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새 마을 과 주	
	서 영 숙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8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p>운수 3과 지방행정 주사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이영환</p>	<p>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김동찬</p>
<p>지방행정사무관시보에 임함.</p>	<p>김기업</p>	<p>동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이인득</p>
<p>부녀사업관장에 보함.</p>	<p>김상대</p>	<p>지방비서관 (3급을류상당)에 임함.</p>	<p>정중흡</p>
<p>의약과 지방의무 기좌시보 정신병원파견 근무를 명함.</p>	<p>김대로</p>	<p>1호봉을 급함.</p>	
<p>종로구 지방건축 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도성만</p>	<p>제2부시장실검 시정개발담당 관실, 근무를 명함.</p>	
<p>종로구 지방건축 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전채규</p>	<p>◎ 1974.2.17</p>	
<p>남동지사업소 부 지방농림 소 기 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구도서</p>	<p>토목과 지방건설 사 지방공무원법제 6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송창희</p>
<p>중구보건소 지방의무 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신태송</p>	<p>◎ 1974.2.19</p>	
<p>정신병원 지방의무 부 기 감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이원표</p>	<p>서부위생 지방건설 처 리 장 기 원 지방공무원법제 63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p>	<p>김영국</p>
<p>중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최남주</p>	<p>북동지사업소 부 지방농림 소 기 원보시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김오권</p>
<p>◎ 1974.2.16</p> <p>중구보건소 지방행정 주 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이한경</p>	<p>도봉구 지방토목 (토목과장) 기 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장옥환</p>
<p>중구보건소 지방행정 사무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농지과 지방농림 (사방조립제장) 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김영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 의약과 지방의무 의무계장 기좌시보 김상대</p>
<p>◎ 1974. 2. 20 경기도 지방농림 양명군지제면 기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원에 임함. 7 호봉을 급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농림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7 호봉을 급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p>	<p>조종천 정신병원파견 근무를 해제함. 도봉구 지방행정 청소과장 사무관 양회준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성동구 지방의무 보건소장 기정 문홍묵 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의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p>
<p>충북충주시 지방행정 서기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총무과(시장실) 파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교수부 사무관 채홍식 총무과(제 1 부시장실) 파견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내무 지방행정 국새마을지도과 사무관 채홍식</p>	<p>김병화 ◎ 1974. 2. 25 인천시 지방지적 총무국세정과 기원보 김강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지적기원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인천시 지방지적 총무국세무과 기원 이영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지적기원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성동구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정 정 정한다.
 시보 제 430 호('74. 2. 6)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정 197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페이지 및 조항	오 기	정 정
표지 차례 139-3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안)	서울특별시인사규칙
139-4 제4 조 제 1 호	기능직은	기능직 :
139-4 제4 조 제 3 호	시장, 구청장	시장, 구청은 구청장
139-6 제11 조 제 1 항	신규임명	신규임용
139-7 제 17 조	(3)	(2)
139-9 제 21 조제 2 항제 2 호	신규임명	신규임용
139-11 제 24 조	(3)	(2)
139-20 제 53 조제 1 항	신규임명	신규임용
139-23 제 62 조제 4 항	직명별급의	직명별봉급의
139-24 제 65 조제 2 항	전 원, 1월 15일까지의 분	전 원, 1월 15일까지의 분을
139-25 제 73 조제 3 항	선출한	선출한
139-26 제 79 조제 1 항	사장이상의	시장이상의
139-35 제 108 조	소청절차	소청절차
139-38 제 118 조	표창대상	표창대상
139-38 제 119 조제 1 항	신규임명	신규임용
139-40 제 126 조제 4 호나	불이익	불이익
139-113 별지제 41 호서식 비고 2	중착, 작성일	중복, 작성일
139-114 별지제 42 호서식	(6) 초급	(6) 초대
139-115 별지제 43 호서식	(12) 강임	(12) 강임
139-124 별지제 51 호서식	정기 진급보고서, 경계처 분	정기 승급보고서, 경고처 분